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32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김정호 · 이연희 · 이수진
박해철 · 허종식 · 윤후덕
임미애 · 강준현 · 허성무
전진숙 · 안태준 · 민홍철
최혁진 · 김승원 · 박상혁
허 영 · 이정문 · 박범계
의원(18인)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로 대표되는 동남권은 전통적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중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해당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해 동남권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금융공급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금융 인프라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남권 사업의 개발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맞춤 정책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산업·경제 생태계 전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동남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동남권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동남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사는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정부, 동남권 지자체와 주요 국책은행, 동남권에 본점을 둔 은행 및 관련 기업들이 출자하여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공사에 사장, 부사장 및 감사를 각 1명씩 두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및 이사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및 제15조까지).

라. 공사는 투자, 신용공여 또는 자산의 인수 등의 방식으로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인프라 확충, 동남권기업 지원 등의 자금 공급 업무를 수행함(안 제16조).

마. 공사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공사는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상 손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등).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이와 연계된 산업 생태계의 지원, 그 밖에 지역의 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동남권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늘려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남권”이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법인) 동남권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둔다.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

-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

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동남권에 본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동남권에 소재한 법인 등이 출자한다.

③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④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출자 외에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동남권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9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사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이사의 수는 부사장 1명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⑤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이사회)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

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임원의 겸직 제한)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장 업무

제16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동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2. 동남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3. 동남권에 소재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의 지원
4. 동남권 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공사는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금의 대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의 투자

3. 자산의 매수

4. 자금의 차입

5. 사채의 발행

6.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7. 제1호 및 제6호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8. 사채의 인수

9. 동남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

10. 정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
하여 위탁하는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은 부대업무

1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업무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
국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업무방법서) 공사는 제1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
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공사가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3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사채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

다.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회사에의 예치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2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제3호에 따른 준비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25조(손실금의 보전)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준비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고·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동남권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한 자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임면·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회는 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출자 제한의 특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는 공사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